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3865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633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3865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김정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승구

변론종결 2020. 8. 1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7,2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2019.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11. 12. 30.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30.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 피보증인은 피고를 포함한 330명의 직원, 총보험가입금액은 660억 원(1인 당 2억 원), 보험기간은 2011.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1차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 피보증인은 피고를 포함한 373명의 직원, 총보험가입금액은 746억 원(1인 당 2억 원), 보험기간은 2012. 12. 15.부터 2013. 12. 14.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2차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1) 피고는 2011. 9.부터 2013. 8.까지 소외 회사의 D 전시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 7. 21.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364 등).

소외 회사는 피고의 범죄행위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112,66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2차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112,665,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고객인 소외 주식회사 E의 기존 차량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신차선수금 및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E에게 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55865), 원고는 2015. 9. 23. 2차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소외 F 등으로부터 중고차 위탁매매를 위임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대금 등을 입금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F 등에게 배상금 75,467,100원을 지급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650), 원고는 2016. 12. 23. 1차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30,257,2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개인회생

(1) 피고는 2016. 3.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12. 1. 서울회생법원(2016개회23918)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4. 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위 나. (1), (2)항의 구상채권 132,665,000원을 기재하였다.

【근거】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1의 나. (3)항의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구상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인 2016. 12. 23. 발생하였다. 이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명칭 생략) 제604조 제1항에 따라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이의마감일인 2016. 12. 28.까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로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제60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구상채권이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23918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한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따라서 이 사건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F 외 5명은 이 사건 구상채권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650), 2015. 5.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2045510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제589조의2 제1항),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제589조의2 제2항).

그러나 피고는 2016. 3.경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2016. 2. 26.자로
확정된 위 F 등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았다(을 제2호증 참조). 한편 이 사건 구상채권은
원고가 위 F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F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구상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채권
30,257,2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9. 30.까지
민법 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강영훈